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6-93호

국민권익위원회 제3기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

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6-81호, 공고 제2026-88호와 관련하여,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공고의 합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.

2026년 9월 7일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○ 상세 기본증명서 1부(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)

○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

○ 증명사진 1매(파일제출)

○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(붙임1)

※ 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, 채용 포기서(붙임2)를 서류제출 기간('26. 9. 10. 18:00)까지 제출

□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

○ 제출기한 : **'26. 9. 10.(목) 18:00**

○ 제출방법 : 청년인턴DB 내 모집공고

□ 유의사항

○ 합격자 통지 후,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채용 예정일은 **'26. 9. 14.(월)**입니다.

□ 최종합격자

지원코드	채용분야	최종합격자(응시번호 순)	차순위자
인턴01	일반행정	강○○(1003), 서○○(1015), 조○○(1028)	박○○(1014)
인턴02	조사행정	오○○(2004)	-
인턴03	일반행정 _서울	오○○(3038)	노○○(3023)
인턴04	일반행정 _청주	김○○(4006)	김○○(4003)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결정

□ 문의처 : 044-200-7185(운영지원과)

<붙임1>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(채용결격사유 등 확인)」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6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

<붙임2> 채용 포기서

채용 포기서

■ **시험구분** : 국민권익위원회 제3기 청년인턴 채용
■ **지원코드** :
■ **성　　명** :　　■ **생년월일** :

위 본인은 (　　)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인턴으로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■ **일자** :
■ **성명** :　　(서명 / 인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중

※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: 타시험 합격, 현직장 유지, 사업상, 질병, 가사형편 등
※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